

[3-2] 세원투명성 제고대책 추진

1.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배제대상 규정 (조특영§121의2)

현 행	개 정 안
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배제 대상 ○ 국세·지방세, 전기료, 수도료, 가스료, 전화료, 고속도로 통행료 ○ 여권발급수수료 ○ 금융기관에의 차입금이자	☐ 소득공제 배제대상 명확화 ○ 국가·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·용역*에 대한 대가 - 여권발급수수료, <u>공영주차장 주차료</u>, 휴양림이용료 등 *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업종(소매업, 음식·숙박업)이 아닌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·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- <u>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</u>(예: 우표, 일반소포 등) ○ 금융·보험용역에 대한 대가 (예: 차입금이자, 증권거래수수료, 환전수수료 등) ○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(후원회 및 각급 선관위 포함)에 신용카드로 결제·기부하는 정치자금

〈개정이유〉 과표양성화와 무관한 지출 또는 중복공제 성격이 있는 지출 등에 대해 소득공제 배제